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074호)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

2021.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지 원

목 차

[전재수의원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김예지의원안]

I. 제안경위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III. 검토의견	9

[이재정의원안]

I. 제안경위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
III. 검토의견	15

[정경희의원안]

I. 제안경위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III. 검토의견	22

[한병도의원안]

I. 제안경위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7
III. 검토의견	28
1. 지역민방에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한 부여	28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의무 중계방송대상 확대	34

[정희용의원안]

I. 제안경위	3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
III. 검토의견	40

[엄태영의원안]

I. 제안경위	4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4
III. 검토의견	46

[윤영덕의원안]

I. 제안경위	5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
III. 검토의견	53

[이종배의원안]

I. 제안경위	5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8
III. 검토의견	60

[김민기의원안]

I. 제안경위	6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5
III. 검토의견	67

[김경협의원안]

I. 제안경위	7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1
III. 검토의견	73

[조정훈의원안]

I. 제안경위	7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8
III. 검토의견	80

[지성호의원안]

I. 제안경위	9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0
III. 검토의견	92

[임호선의원안]

I. 제안경위	9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6
III. 검토의견	98

[윤창현의원안]

I. 제안경위	1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8
III. 검토의견	110

[전재수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6. 24.
3. 회 부 일 : 2021.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당선 이후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호,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그 관계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률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계 법률의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한편,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選舉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자 제49조의2(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이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에게 조사에 필요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録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 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1. (생략) ② ~ ④ (생략)	<u>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u>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그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 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u> ③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후보자등 록을 신청한 사람과 그 관계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u> 제52조(등록무효)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u>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공사의 임직원만이 알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서 불법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배경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윤리적 자질을 확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의 항목, 가액 및 형성과정 등을 제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등록 신청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부동산의 각 항목별 형성과정이 적법한지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제한, 등록무효 등 일정한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¹⁾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²⁾로서 부동산 거래관리 및 공직자의 윤리성 검증 등과는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관계 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정된 인력,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선거일까지 선거기간동안 예상되는 업무과중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조사 및 후속조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또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위법사실이 있는 후보자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성과 청렴성 확보에 일정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2)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반정도나 행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관계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 제한 등 후보자에게 각종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피선거권은 「대한민국헌법」 제25조³⁾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참정권)으로, 그 제한은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원리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19조는 피선거권 제한의 사유로 단순히 위법사실이 발견된 것 외에 법원의 구체적인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⁴⁾

또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의 범위와 요구대상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3)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4)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자의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5)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위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여부 및 입법시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민주정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써 그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정성, 법익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 전문성 등 고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임.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김예지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42인
2. 제 안 일 : 2021. 7. 2.
3. 회 부 일 : 2021.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 또한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하 “투표보조인”이라 함)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選舉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u>자신이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u> 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⑥ ----- ----- ----- ----- ----- ----- <u>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u>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헌법」⁶⁾에 따라 선거권을 가짐. 이는 모든 국민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즉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이는 헌법 차원의 요청임과 동시에 현행법⁷⁾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⁸⁾ 등 개별법률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함.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기표소에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라는 요인에 관계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6)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7)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는 범위가 불명확하고, ‘현저히 곤란한’ 부분의 해석상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등 투표보조인을 동행할 수 있는 선거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일단 ‘정신적 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는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장애의 종류로 지적장애인⁹⁾, 자폐성장애인¹⁰⁾, 정신장애인¹¹⁾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과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는 그 특성상 상대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보다 장애로 인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지가

9)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10)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양극성 행동장애 등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¹²⁾ 설사 외부에 드러나더라도 곤란함의 정도(현저한지 여부)는 선거인 개개인과 투표관리관 등 투표소 내의 인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관성있고 공정한 선거사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2) 현행법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대법원이 해당 선거인을 시력상실 등 시각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형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으로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①손 떨림 등이 심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②시지각 협응능력(눈의 시각정보와 손의 운동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용하는 능력) 저하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보조인의 동행을 인정하고 있음.

[이재정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5.
3. 회 부 일 : 2021.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의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보궐선거·재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그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선거방송을 정정·중지하는 등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마예정자의 예비입후보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운영하여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궐선거등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을 마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방송에 출연 하더라도 이를 제때 조사하여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대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第8條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 ① -- ----- -----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삭 제> <삭 제>

<u>30일까지</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기(始期)를 도과한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이지만 본인의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행보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등에 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시점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로 앞당김으로써 보궐선거등과 관련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보궐선거등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보궐선거등을 통해 선출하는 공직자의 종류별로 선거일 전 240일·120일 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60일로 정해져 있어,¹³⁾ 개정안과 같이 보궐선거등의 선거방송

1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개시일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로 변경된다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은 최소 13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보궐선거등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되어¹⁴⁾ 결과적으로는 선거일전 60일 이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라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은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 한정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선거방송은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의 관련 법규

14)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를 준수해야 하고, 선거방송의 내용이 현행법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법 제97조¹⁵⁾ 및 제98조¹⁶⁾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개정안의 도입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설치·운영할 필요성 및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임.

15)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16) 「공직선거법」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정경희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경희의원 등 53인
2. 제 안 일 : 2021. 7. 12.
3. 회 부 일 : 2021.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사전 투표일이나 본 투표일에 투표소·개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각 인력은 공무원·교직원·은행직원 등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고 있음.

이들은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 안내, 투표함 봉인·개함 및 집계 등 투표·개표 절차상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법률은 선거일 전 3일까지 위촉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공고된 성명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이 일치하

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해당 공고 규정은 2018년 4월 6일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으며, 당시의 개정 목적이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의 자료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 전 법률의 내용과 같이 성명 공고 절차를 다시 도입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제148조, 제174조 및 제26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⑨ (생략) <u><신설></u> ⑩ · 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 · 사용협조, 설비, <u>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u>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u><후단 신설></u> ⑤ · ⑥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 ② (생략) <u><신설></u>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위촉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사전투표사무원의 성명 공고와 추천 협조</u>----- -----<u>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u>----- . 이 경우 “선거일 전 3일까지”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로 본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개표사무원의

③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바. (생 략)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 제10항(제14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 (생 략) 3. ~ 6. (생 략) ⑧ ~ ⑫ (생 략)	<u>성명을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제147조 제11항----- ----- ----- 제174조 제4항----- ----- 아.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47
--	---

	조제10항 및 제1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도래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투표사무원의 성명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사전)투·개표사무원은 (사전)투·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으로 (사전)투·개표소에서 선거인의 신분 확인, 투표안내, 투표함 봉인·개함 및 집계 등 투·개표 최일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전)투·개표사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일선의 선거사무가 선거의 공정한 진행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이 (사전)투·개표사무원의 신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개표사무원 업무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사전)투·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제도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

정방지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해왔으나, 2017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 제1555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 4. 6. 시행되면서 폐지된 제도임.

구체적인 논의 경과를 보면, 2017. 9. 1. 제35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임박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투·개표 인력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개표사무원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관련 개정의견을 보고한 바 있고, 2017. 9. 25. 제35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정당·정치자금법및지방선거관련법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원안 통과하기로 결정했음.

이후 2017. 12. 7. 제354회국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고, 2017. 12. 19. 위원회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018. 3. 30. 제35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투표관리의 투명성 확보, 투·개표사무원 교체신고로 인한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 등과 함께 (사전) 투·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제도와 관련된 현행법의 개정 연혁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개표사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후 선거일(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도 사무원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거일(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전까지 투·개표 사무원 성명을 공고하는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한병도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14.
3. 회 부 일 : 2021.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Ⅲ. 검토의견

1. 지역민방에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한 부여

개정안은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지역민영방송사 또한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공영방송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생략)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 ----- -----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	1. ----- ----- ----- ----- ----- ----- -----

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
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
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생략)

③ ~ ⑩ (생략)

---- 지상파방송사(「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텔레비
전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7제2항제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
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

	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각각 추천한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우선하여 위촉한다.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나뉜다.

이 중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정당추천	공영방송사추천	위원회위촉	계
중앙	2	2	7	11
시·도 (위원회평균)	33 (1.9)	34 (2)	75 (4.4)	142 (8.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로서 각각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와 EBS 등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음.

<지상파방송사업자(TV) 현황>

구 분		TV채널	지배회사
공영방송 (3)	한국방송공사	KBS	
	(주)문화방송	MBC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지역민방 (10)	(주)SBS	SBS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KNN	KNN	넥센
	티비씨	TBC	귀뚜라미홀딩스
	광주방송	KBC	JD인베스트먼트
	대전방송	TJB	우성사료
	울산방송	UBC	삼라
	전주방송	JTV	일진홀딩스
	청주방송	CJB	두진건설
	지원(G1)	G1	SG건설
	제주방송	JBS	한주홀딩스
독립방송 (1)	오비에스경인티브이	OBS경인	영안모자

개정안은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 또한 공영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지역민영방송사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음에

도 공영방송사와 달리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또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공영방송사는 중앙 및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한 외에 현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에 따라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본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에 대한 위원추천 권한 부여 여부는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의 의무적 중계방송 여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공영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면서 국민의 납부하는 수신료를 그 운영재원으로 하거나(KBS),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로서 사장을 선임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등(MBC) 일반적인 방송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공영방송사와 마찬가지로 「방송법」에 따라 일정한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¹⁷⁾하고 있으나 공영방송사

17)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법체계상 기존에 현행법에 따라 위원추천 권한이 있던 공영방송사의 추천권한 여부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공영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에 유지하면서, 그 외 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범위만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전국적인 방송망을 갖추고 있는 공영방송사와는 달리 지역민영방송사업자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된 가청권역을 가지고 있어 주된 가청권역 내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 지역민영방송사업자에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가청권역 외의 시·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의무 중계방송대상 확대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으로 중계방송해야하는 방송사를 공영방송사에서 지상파방송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⑨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u>공영방송사</u> 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u>지상파방송사</u> 는----- ----- ----- ----- ----- ----- ----- ----- ----- ----- -----.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⑪ ----- -----

· 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u>공영방송사가</u>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u>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u>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 ⑭ (생략)	----- -----<u>지상파방송사가</u>----- -----<u>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u>----- ----- -----. ----- -----. ⑫ ~ ⑭ (현행과 같음)
--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및 정강·정책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사는 자기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고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의 경우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SBS 등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 주민에게 특히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역민영방송사는 대담·토론회를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계방송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정안은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담·토론회가 더 많은 방송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비롯한 유권자의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지역민영방송사는 현재도 현행법 제82조의2제13항¹⁸⁾에 따라 그의 부담으로 자유롭게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시·군의장 선거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직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선거보다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덜 알려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의 도입 시 의무중계방송에 따른 지역민영방송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제약과 지역민영방송사의 비용부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도입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제82조의2제10항을 개정하여 대담·토론회의 의무중

18)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계방송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관련 규정인 제82조의3제2항¹⁹⁾에서 제82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 대상 방송사업자 외에 정책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 대상 방송사업자도 확대되고 있어 이의 포함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유권자의 시청권 보장, 민영 방송사의 중계방송비용 의무 부담에 따른 재산권 침해 여부, 관련 방송사 의견²⁰⁾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19)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20) SBS 등 지역민영방송사 10개사가 포함되어 있는 한국민영방송협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수용 입장임.

[정회용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22.
3. 회 부 일 : 2021.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 일부 열거된 행위는 예외적으로 이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상에서 수행되는 각종 통상적인 활동들이 선거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 등이 농촌의 일손을 돕거나 재해 구호에 나서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 및 처벌 대상이 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클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호나 자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재해구호·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기부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부행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수호적·자선적 행위 중 하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 아.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③ ~ ⑤ (생략)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다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의 경우 농번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하여지는 봉사활동에 한정한다.</u>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 제3자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동시에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여 후보자 등이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임.

개정안은 재해구호·장애인돕기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추가하여 후보자 등이 자유롭게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후보자 등의 통상적인 활동의 자유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

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농·어촌 지역, 각종 재해가 발생한 지역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의 후보자가 행하는 일손돕기활동이나 재해구호 활동 등의 수혜자는 대부분 선거구민으로 귀결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행법은 정당이 그의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허용²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후보자가 직접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직접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정당 또는 기관·단체를 통하도록 한 것은 후보자 등이 그의 신분으로 피봉

2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사자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경우 대민 자원봉사활동 등이 다른 목적의 활동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써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이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기관·단체·시설을 통해서만 자선·구호금품 제공이 가능²²⁾한 바,

후보자 등에게 직접 선거구민 등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대민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부행위를 허용할지 여부는 정치인의 대민 자원봉사활동 확대 필요성과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봉사활동 중 금전·물품 제공이 수반되는 경우(연탄나르기 봉사활동에서 연탄제공 등)가 있어,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2) 국회의원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의 구호·자선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가능(2008. 7. 7.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엄태영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7. 29.
3. 회 부 일 : 2021.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

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
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
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u><신설></u>	제67조(현수막) ① ----- ----- ----- -----말한다.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u>게시 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u>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게시 방법과 제2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u>제67조의 규정에</u>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 너. (생략) 2. ~ 4. (생략) ④·⑤ (생략)	1. ----- ----- 가. <u>제67조제1항 및 제3항을</u>----- ----- 나.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제작되고, 그 내용이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됨. 소각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미세플라스틱 등이 발생하고, 매립되더라도 잘 썩지 않아 토양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폐현수막은 바로 소각하거나 매립하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적절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함으로써 선거용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폐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세척, 건조,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가

능한 상태로 제작된 후 에코백, 지갑,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대로 선거용 현수막이 처음부터 세척이 쉬운 재질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선거용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 촉진 조치가 된 현수막의 제작 단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재활용이 용이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주로 ‘타이백’²³⁾이라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타이백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2~3배 가량 비싸다고 알려져 있음.²⁴⁾ 또한 개별 후보자별로 공직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현행법 제121조²⁵⁾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 촉진 조치로 인해 현수막 제작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만큼 다른 선거관련 비용에 제출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됨.

둘째, 선거용 현수막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폐현수막은 기본

23) 미국의 화학회사 듀폰사가 개발한 소재로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합성소재임. 가볍고 방수성, 내구성 등이 우수하며 소각 시 인체에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며, 매립해도 화학물질을 유출하지 않음.

24) 참고로, 선거용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거리게시용 현수막 제작비의 통상거래가격은 제곱미터당 15,000원이었음.

25)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 9. (생략)

적으로 디자인 및 오염도에 따라 재활용 여부가 결정되는데, 선거용 현수막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기호, 이름, 얼굴 등을 인식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 등이 크게 인쇄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임. 또한 실외에 주로 게시되어 눈·비, 매연 등 오염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편이고,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강도 등이 약한 경우가 많아 선거용 현수막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한편, 개정안은 현수막의 재활용 촉진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제한규정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수막에 재활용 촉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²⁶⁾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재활용 촉진 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단가 상승에 의한 선거비용 증가 우려 및 후보

26)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자의 선거운동 제한 문제제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거리현수막 외에 선거사무소 등 외벽현수막 또한 재활용 촉진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임.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수막의 종류>

근거규정	종 류	매수 제한
§57의3	당내경선운동 중 옥내 합동연설회·토론회 시 경선후보자가 개최장소에 사용하는 현수막	2매
§58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	없음
§60의3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61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61의2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	
§67	후보자 거리게시용 현수막	읍·면·동수 2매 이내
§118	선거일후 답례 현수막	읍·면·동 마다 1매
§145①	정당의 당사 게시 현수막	없음

[윤영덕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영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11.
3. 회 부 일 : 2021.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게 됨.

이는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상근직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2019헌가11),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문제된 유사한 성격의 사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124).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第2號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者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 9. (생략) ②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제5호</u> ----- -----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운

동을 금지하면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5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상근 임원 외에 상근직원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입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한편,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개정안의 심사시 이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과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으며,²⁷⁾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다만, 위의 사례에서 헌법재판관 2인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운송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비교적 지역주민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²⁸⁾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7)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28)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는 차이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성,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의 상근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과 내용,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성에 대한 요구 정도 및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등 제반 사정²⁹⁾과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 정도가 공직선거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³⁰⁾며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을 구분하여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29) 선거운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람의 인적 범위는 입법자가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규율대상자의 직무의 성질과 내용을 살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성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선거에 개입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할 사항임.(헌법재판소 2004.4.29. 결정 2002헌마467)
- 30) 헌법재판소 2021. 4. 29. 결정 2019헌가11

결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담당 직무의 성질과 내용,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성,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현행법 제86조에 따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일관된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법적안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해당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³¹⁾

31) 본문에서 언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 사례의 경우에도 현행법 제86조제1항을 함께 개정하였음.

[이종배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20.
3. 회 부 일 : 2021.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기초의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따른 당선 통계를 보면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기호 ‘가’를 부여받아 당선된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실상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동일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간 유·불리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참고하여, 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단위로 후보자별 게재순위를 순환배열 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읍·면·동 단위 투표구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 ⑥ (생략)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u>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u>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⑧ ~ ⑩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の 掲載順位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투</u> <u>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u> <u>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투표구</u> <u>별로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u> <u>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u> -----. ⑧ ~ ⑩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	---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기본적으로 ①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②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③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1, 2, 3…” 등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게재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결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게재 방법은 “1-가, 1-나, 1=다…” 등에 따르고 있음.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2인에서 4인까지로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후보자가 많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유권자의 관심도가 분산되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선거보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어 투표용지의 게재방식이나 순서 등이 유권자의 선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역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기호(가)의 당선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기호별 당선자수 및 비율>

구 분	당선자	기호(가)	기호(나)	기타 기호
제1회	4,541명	1,472명	1,667명	1,402명
지방선거	100%	32.4%	36.7%	30.9%
제2회	3,485명	1,570명	1,084명	831명
지방선거	100%	45.0%	31.1%	23.9%
제3회	3,494명	1,328명	1,243명	923명
지방선거	100%	38.0%	35.6%	26.4%
제4회	2,513명	1,057명	642명	814명
지방선거	100%	42.1%	25.5%	32.4%
제5회	2,512명	1,152명	474명	886명
지방선거	100%	45.9%	18.9%	35.2%
제6회	2,519명	1,134명	521명	864명
지방선거	100%	45.0%	20.7%	34.3%
제7회	2,541명	1,030명	532명	979명
지방선거	100%	40.5%	20.9%	38.5%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현행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와 유사하게 읍·면·동 단위 투표구별 순환배열방식³²⁾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용지 게재순서의 상위순서를 받은 정당추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2)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첨으로 정한 게재순위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배열하는 형태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이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후보자가 순환배열되도록 하고 있음.

<기초의회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모형>

기초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A, B, C 유형)																																											
구의회의원선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가</td> <td style="width: 15%;">갑</td> <td style="width: 15%;">당</td> <td style="width: 15%;">백</td> <td style="width: 15%;">두</td> <td style="width: 15%;">산</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나</td> <td style="width: 15%;">갑</td> <td style="width: 15%;">당</td> <td style="width: 15%;">한</td> <td style="width: 15%;">라</td> <td style="width: 15%;">산</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2-가</td> <td style="width: 15%;">을</td> <td style="width: 15%;">당</td> <td style="width: 15%;">관</td> <td style="width: 15%;">악</td> <td style="width: 15%;">산</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2-나</td> <td style="width: 15%;">을</td> <td style="width: 15%;">당</td> <td style="width: 15%;">도</td> <td style="width: 15%;">봉</td> <td style="width: 15%;">산</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3</td> <td style="width: 15%;">병</td> <td style="width: 15%;">당</td> <td style="width: 15%;">속</td> <td style="width: 15%;">리</td> <td style="width: 15%;">산</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투표관리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 험 운 영</td></tr> </table> 모형	1-가	갑	당	백	두	산		1-나	갑	당	한	라	산		2-가	을	당	관	악	산		2-나	을	당	도	봉	산		3	병	당	속	리	산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교육감선거후보자의정당명칭을 기재한다 시도교육감선거 (A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투표관리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 험 운 영</td></tr> </table> 백 두 산 한 라 산 관 악 산 모형 교육감선거후보자의정당명칭을 기재한다 시도교육감선거 (B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투표관리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 험 운 영</td></tr> </table> 한 라 산 관 악 산 백 두 산 모형 교육감선거후보자의정당명칭을 기재한다 시도교육감선거 (C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투표관리관</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시 험 운 영</td></tr> </table> 관 악 산 백 두 산 한 라 산 모형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1-가	갑	당	백	두	산																																							
1-나	갑	당	한	라	산																																							
2-가	을	당	관	악	산																																							
2-나	을	당	도	봉	산																																							
3	병	당	속	리	산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투표관리관																																												
시 험 운 영																																												

개정안에 따라 순환배열방식이 도입될 경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사이의 형평성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구·선거벽보·선거공보 등에 기호 기재 문제 및 이에 따른 다종의 투표용지 작성·배부,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

발송 등 선거관리 곤란, 선거인 혼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투표구별 인구 편차 등으로 인해 순환배열방식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성 제고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우려가 있고, 공직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으로 어느 순번에 어떤 후보자를 배정할 것인지는 정당에서 결정할 내용이며, 현행 규정에서도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기호를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됨.

[김민기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27.
3. 회 부 일 : 2021.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色度)나 지질(紙質)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구분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재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는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투·개표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해져 있어, 색각이상자가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빠르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개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을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투표용지 색도의 경우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1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동시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용지의 색도는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 등을 달리하는 등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舉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의 색도는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두 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나 지질을 달리하는 등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유권자가 선거의 종류를 혼동하여 잘못 기표하거나 투·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용지 및 투표지를 잘못 교부·분류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2의2에 따른 투표용지의 색도를 보면 흰색 외에 연두색, 계란색, 하늘색, 연분홍색, 연미색, 스카이그레이색이 사용되고 있음.

<투표용지의 색도>

선 거 명		색 명
대 통 령 선 거		흰 색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흰 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연 두 색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임기만료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	시·도지사선거	흰 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 란 색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하 늘 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연분홍색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연 미 색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선거	스카이그레이
	교육감선거	연 두 색
	교육의원선거	연 미 색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 시하는 보궐선거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스카이그레이
	시·도지사선거	하 늘 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계 란 색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연분홍색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선거	스카이그레이
	교육감선거	하 늘 색
	교육의원선거	연 미 색

그런데 색각이상자는 현행 색도기준에 따른 투표용지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고, 과거 일부 개표소에서는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지 일부가 뒤섞이는 사건이 있는 등 현행 투표용지의 색도체제의 일부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안은 투표용지의 색도는 색맹이거나 색약인 선거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도로 정하도록 하면서, 투표용지의 색도와 지질 구분에 따른 작성·교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편의와 효율적인 투·개표사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색각이상자의 구분>

색각이상	증 상	
색 맹	적색, 녹색, 청색 원뿔세포 중 두가지 원뿔세포만 존재해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전색맹	전체적으로 색을 구분하지 못함
	부분색맹	부분적으로 색을 구분하지 못하며 청황색맹과 적록색맹으로 나뉨
색 약	원뿔세포 중 한가지 기능이 약해져 색을 식별하지 못함	
	녹색약	적색과 녹색의 구별능력이 다소 떨어지나 밝기에 대한 인지는 정상인과 동일함
	적색약	적색과 녹색의 구별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정상인보다 적색을 더 어둡게 인지함
	청색약	청색과 황색의 구별을 어려워함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 1명이 최대 7표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색각이상자인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투표용지 상단에는

선거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고, 선거일에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선거인에 교부함으로써 색각이상 선거인을 포함한 모든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투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개정안의 도입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투표용지의 색도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유·불리의혹 차단, 투표지 분류기 오류 방지를 통한 원활한 개표업무 수행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색도 결정은 중장기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색각 이상자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투표용지의 색도 결정요인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색각이상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구분하기에 보다 용이한 배색을 검토한 바 있으나, 해당 배색에는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투표용지 인쇄 시 색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

[김경협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경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8. 30.
3. 회 부 일 : 2021. 8.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음.

그러나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현재 시각장애인의 점자 비문해율이 매우 높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권

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u>작성·제출하여야 하되</u> ,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u>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u>	④ ----- ----- ----- ----- ----- ----- -----세 배----- -----. ----- -----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 ----- -----표시하여야 한다.
⑤ ~ ⑭ (생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제출하지 아니한 사람</u> 3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출하지 않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

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갈음할 수 있음.

개정안은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제한 매수를 상향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 투표행위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행	책자형	16면 이내	12면 이내	8면 이내
	점자형	32면 이내(필수)	24면 이내(필수)	16면 이내(선택)
	바코드	선택		
개정안	점자형	48면 이내	36면 이내	24면 이내
	바코드	필수		

먼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한 면수를 상향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점자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나열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문자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책자형 선거공보보다는 많은

면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은 2010년 이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되어 오다가, 2020. 1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상향(법률 제17813호 「공직선거법」)된 것인데, 면수 제한 상향 이후 아직 한 차례의 전국단위의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된 바 없어 현행과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또한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시설이 한정³³⁾되어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상향 시 그만큼 작성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상향은 시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필요성, 인쇄량 증가에 따라 제한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점자출판시설의 한계, 후보자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최소매수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다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점자출판시설은 전국 36개소(수도권 20개소)에 불과함.

의 책자형 선거공보 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 중 1~4급 장애인에 대한 점자해독 가능비율은 12.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의무화를 통해 음성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제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성우녹음 등)가 있을 수 있고,³⁴⁾ 해당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⁵⁾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프로그램(VOICEYE)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무료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작할 수 있음.

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입장임.

[조정훈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1. 8. 31.
3. 회 부 일 : 2021. 9.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공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출받아 각 세대에 발송하고 있음.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매 선거마다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약 4억 5천만부의 선거공보가 사용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등을 위한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이를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전자 선거공보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라.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도록 함(안 제65조의2제7항 신설).
- 마.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선거인이 전자적 형태의 책자형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함)의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발송하도록 하며,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 ----- -----이 조 및 제65조의 2에서-----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③ ----- -----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 ⑭ (생략)

<신설>

-----합
한 수에서 제65조의2제7항에 따라 책
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수에-----

-----.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등) ① 후보자
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
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형
태의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라 책
자형 선거공보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 제
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형태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후보자
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선거공보
및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제출,
발송 신청 및 발송 등을 위하여 정
보시스템(이하 “전자선거공보통합관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선거공보등을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거공보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7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송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⑦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모두 제5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가족(세대원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을 대리하여 본문에 따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④ (생략)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64조제1항 · 제9항, 제65조제1항 · 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

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기한에 대해서는 제65조제6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⑨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자선거공보등의 가격 · 작성 · 제출 · 확인 · 발송 ·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비용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제65조제1항 · 제2항, 제65조의2제1항 · 제2

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選舉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 8. (생략) ③ ~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③ ~ ⑫ (생략)	항----- -선거공보·전자선거공보등----- ----- -----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선거공보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로 대통령선거후보자의 경우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의 경우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는 8면 이내로 각각 작성하여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고나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후보자의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수와 각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면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양의 종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제출된 선거공보의 총량은 각각 4억매를 넘었음.

<제19대 대선과 제21대 국선의 선거공보 제출 현황>

선거명		책자형 선거공보	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용)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계
제21대 국회의 원선거	지역구	104,098,629	3,647,979	-	285,870	108,032,478
	비례 대표	307,098,945	10,762,937	-	772,743	318,634,625
	계	411,197,574	14,410,916		1,058,613	426,667,103
제19대 대통령선거		306,246,209	10,269,981	89,863,380	941,500	407,321,070

*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삽입한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책자형 선거공보 매수와 중복 산정되었을 수 있음.

개정안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책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등”이라 함)을 각 세대별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와 개정안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법(책자형 선거공보)과 개정안(전자선거공보)의 비교>

구 분	책자형선거공보(현행)	전자선거공보(개정안)
작성	공직선거별 제한매수 안에서 작성하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
작성수량	선거구 안의 세대수 + 예상거소투표신고인수 + 예상 선거공보발송신청인수	-
제출방법	배부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위원회에 제출	중앙위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기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7일 등 공직선거 종류별로 다름	책자형선거공보 제출기한과 같음
발송	구·시·군 선관위 관할구역 내의 매 세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 선거공	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선거인에게 발송

	보발송 신청자에게 발송	
발송방법	우편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송
기타		모든 세대원이 전자선거공보 발송 신청한 세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미발송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은 선거의 경향이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점차 전환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고, 전자선거공보가 활성화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수량이 감소하여 그만큼 선거 관련 폐기물이 감소하는 효과 외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수량이 줄어든 만큼 후보자가 다른 선거 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현재도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³⁶⁾를 통해 선거공보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국민이면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고,

세대 내의 선거인인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전자선거공보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책자형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전자선거공보의 도입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수량 감소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효과는 개정안의 취지보다 낮은 우려가 있음.

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 선거일 이후에는 당선인에 한정하여 임기 중 해당 사항이 공개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수량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³⁷⁾되어야 하므로 세대 내 선거인인 세대원의 전자선거공보 수령에 대한 의사표시는 해당 기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데 구·시·군 내 선거인 현황은 선거인명부가 작성·확정되어야만 알 수 있고, 선거인명부는 현행법에 따라 선거일전 12일에 확정되고 있어,³⁸⁾ 관련 절차의 개선 없이 현행 선거사무체계 안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전자선거공보등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환경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개정안과 같이 책자형 선거공보를 원칙적으로 발송하되, 선택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전자선거공보등을 원칙으로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택에 따라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본질적인 방안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37)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⑬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첨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제64조(선거벽보)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38) 「공직선거법」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자원 낭비 최소화 및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관할구역 내 세대별 세대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전자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정안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전자선거공보 발송제도 도입 시 전단형 선거공보나 투표 안내문 발송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성호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9. 1.
3. 회 부 일 : 2021.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직위나 성명을 표기하여 재난안전정보나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 등을 수시로 전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구민에게 업무 추진 실적을 각인시키는 간접적인 홍보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 ⑦ (생략) <u><신설></u>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u>	바. <u>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8항-</u> -----
사. ~ 너. (생략)	사. ~ 너.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관련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더해 재난안전 정보나 이와 관련된 조치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문자메시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전송하

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정도, 관할 주민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다만, 현행법은 제86조제5항³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등의 행위는 상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⁴⁰⁾

39)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40)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사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만일 문자메시지에 재난안전정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상시 발행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분기별 발행·배부·방송의 제한을 받는 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정보 안내 등을 위해 전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 규정으로도 일정부분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등을 직명을 게재하여 상시 발행·배부가 가능한 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해당 부서 명의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임호선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9. 13.
3. 회 부 일 : 2021. 9.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한편,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5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4호, 제49조제4항,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및 제266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형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의 형벌 및 벌칙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 ----- <u>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u> ----- ----- <u>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u>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 -----.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다)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결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

3. -----

----- 100만원 이상의 별

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

③ —————

—————

—————

—————

[illegible]

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벌금형(집행유예
를 포함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다. (생략)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
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
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
류

6. · 7. (생략)

⑤ ~ ⑮ (생략)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
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舉費用制限額의 200分の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
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宣告를 받
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
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
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

다. (현행과 같음)

5. -----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 ④-----

-----.

1. ~ 4. (현행과 같음)

5. -----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

6. · 7. (현행과 같음)

⑤ ~ ⑮ (현행과 같음)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

----- 징역형(집행유예
를 포함한다) -----
---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

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64條(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舉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圓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

②-----

-----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第264條(當選人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100萬圓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 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 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圓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

第266條(選舉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

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합한다)-----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받고 확정된 사람의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4호 및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정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임. 과거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제도를 인정해왔으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2016. 1. 6.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8. 1. 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형법」 개정내용>

형법	형법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현행법의 일부 규정은 개정 전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현행법 제18조제1항⁴¹⁾은 선거권이 없는 자에 관한 규정

41)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으로 선거법 등으로서 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②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③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①에 해당하여 5년간 선거권이 없어지지만, 1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②에 해당하여 10년간 선거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개정안은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에 관한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상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칙 등에서 일부 자구의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의 집행유예가 포함됨을 매년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効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나열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나, 입법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한 번 만 나열한 후 약칭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윤창현의원안]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9. 15.
3. 회 부 일 : 2021.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이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되는 신분에 있기 때문임.

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선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당내경선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등 그 권한 범위가 넓어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

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그 권한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해당 당내경선의 경선일(등록무효나 사퇴 등으로 경선일 이전에 경선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u> ⑤ <u>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는 각각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본다.
--	--

당내경선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선으로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나, 당내경선의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⁴²⁾

개정안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당내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내경선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당내경선 중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선거구민을 상대로

42)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6헌바458등 참고

특정 정당 소속 경선후보자를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도지사 등 특정 직군의 경선후보자의 지위가 당내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이 금지⁴³⁾되어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도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당내경선에 참여할 경우 경선운동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지방행정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여부는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보와 직무전념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⁴⁴⁾

다만, 「지방자치법」은 제1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43)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유사하게 개정안에 대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 확보, 직무전념 필요성,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법 체계상 개정안의 내용을 어느 법에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⁵⁾

문 의 처
02)6788-5332

45)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